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9
----------	----

제출년월일 : 2018년 8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 기한으로 봄

나. 그 밖에 오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나. 탈자, 약칭 및 문장부호 등 조문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

(1)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의견 없음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u>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관리·운영) <u>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u>〈신 설〉</u></p> <p>제4조(세입) ① <u>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style="margin-left: 20px;">1.·2.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3. <u>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p> <p style="margin-left: 20px;">4.·5. (생략)</p>	<p>제1조(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u>수질개선특별회계</u>-----.</p> <p>제3조(관리·운영) <u>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u></p> <p>제3조의2(존속기한) <u>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4조(세입) ① -----.</p> <p style="margin-left: 20px;">1.·2.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u>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p> <p style="margin-left: 20px;">4.·5. (현행과 같음)</p>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 4. 작성자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전 원 석 (☎2133-3767)